대학원 학칙

제1장 총칙

제 1 조(목적) 이 학칙은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이념과 부산디지털대학교의 건학 이념인 “기독교 중심의 교육과 하나님과 인류에 대한 봉사”를 위한 통합과 소통의 평생교육 실현과 온라인 교육체계를 기반으로 미래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이론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컨버전스형 인재양성을 실현하고자 설치한 부산디지털대학교 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교육목표) 대학원은 온라인 평생교육의 실현을 통한 능동적 인재양성, 다학제간 통합적 교육을 통한 문제해결 역량을 갖춘 전인적 인재양성, 현장과 연계한 실무교육 추구를 통한 경쟁력 갖춘 인재양성, 인류와 사회공동체에 기여하는 사회공헌형 인재양성을 교육목표로 한다.

제 3 조(학위과정) ① 대학원에 석사학위과정을 둔다.
② 대학원에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연구과정과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제 4 조(학과 및 입학정원) 대학원에 설치하는 학과 및 입학정원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14. 10. 31>

제2장 입학 및 등록

제 5 조(입학시기) 대학원의 입학 시기는 신입학, 재입학 및 편입학, 정원 외 입학을 포함하여 매학기 개시일로부터 4주(28일) 이내로 할 수 있다.

제 6 조(입학자격)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학원 입학전형에 합격하여야 한다.
1. 국내 · 외 정규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취득예정자
2. 법령에 의하여 제1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제 7 조(지원절차) 대학원에 입학을 원하는 자는 시행세칙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8 조(입학전형) ① 입학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 9 조(입학허가) 입학은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와 대학원장을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 <개정

2013. 9. 15>

제 10 조(등록) ① 입학이 허가된 자는 지정된 기일 내에 입학금 및 등록금을 납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② 재학생은 매 학기 초 등록기일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 11 조(입학취소) 입학이 허가된 자가 제6조에 의한 입학자격이 없는 자로 확인되거나 또는 등록기일 내에 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제 12 조(편입학 및 재입학) ① 총장은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 수를 뺀 범위 안에서 재입학 및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재입학을 한 학생에게는 자퇴 또는 제적 전의 취득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③ 재입학 및 편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3장 학년도, 학기, 수업일수 및 휴업일

제 13 조(수업연한) ① 수업연한은 2년 6월(5학기)로 한다.

② 수업연한이라 함은 학위취득에 필요한 최소 등록기간을 말한다.

제 14 조(학년·학기) ①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학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학사운영상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총장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2. 제2학기는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 15 조(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매학년도 30주(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② 천재·지변 기타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학년도 2주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제 16 조(휴업일) ① 휴업일은 교육과정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총장이 정하며, 정기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하계방학
2. 동계방학
3. 국정공휴일 및 임시공휴일
4. <삭제> <개정 2018. 9. 1>

② 비상재해 및 기타의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으며, 임시 휴업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정할 수 있다.

제4장 전과, 휴학, 복학, 자퇴 및 제적

제 17 조(전과) ① 학생은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학과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31>

② 전과는 해당학년, 학기 이전까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한다.

③ 전과한 자는 전출학과에서 취득한 학점을 전입학과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학점인정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4. 10. 31>

제 18 조(휴학) ① 질병, 병역의무, 가정형편상,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4주 이상 수업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신청서와 해당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해 의사진단서 또는 사유서 등)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② 휴학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통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병역의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휴학은 군휴학, 일반휴학, 휴학연기로 분류한다.

1. 군 휴 학 : 병역복무로 인한 휴학으로 입영통지서 사본을 첨부
2. 일반휴학 : 질병, 해외연수, 가정형편,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반휴학은 병·의원 전문의(한의사 포함)진단서, 연수허가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
3. 휴학연기 : 일반휴학에서 군휴학으로 변경하거나 휴학기간을 연기하고자 할 때 입영통지서나 휴학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한다.

④ 병역복무로 인한 군휴학자는 수업일수 3/4선 이후 입영자에 한하여 임시시험을 실시하여 해당학기 성적을 인정할 수 있다.

⑤ 휴학한 자는 학적을 보유하며, 등록금납부기간 이전에는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휴학할 수 있다.

⑥ 장기군복무로 인한 휴학은 의무복무기간 이내에서 군휴학으로 허가하며, 잔여 복무기간은 일반휴학으로 허가한다.

제 19 조(복학) ① 휴학한 자는 휴학기간이 만료된 다음 학기 등록기간에 복학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기간전이라도 휴학사유가 해소된 경우 총장의 허가를 얻어 복학 할 수 있다.

② 복학은 학기개시일로부터 수업일수 1/4선이내에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8. 3. 1>

③ 일반휴학 중 군휴학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대한 자는 일반휴학 만료일 이전까지 병적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군휴학으로 소급 적용하여 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 20 조(자퇴) 본인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자진퇴학(이하 “자퇴” 라 한다) 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사유를 명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21 조(제적)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제적할 수 있다.

1. 학력 및 경력을 위조한 자
2. 휴학기간 종료 후 수업일수 1/4선 이내에 복학하지 않은 자 <개정 2018. 3. 1>
3. 매 학기 총장이 따로 정하는 등록기간 중에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자
4. 퇴학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제5장 교과 및 수업

제 22 조(교육과정)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심의위원회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하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삭제 2016. 10. 31>

② <개정 2014. 10. 31> <삭제 2016. 10. 31>

③ <삭제 2016. 10. 31>

④ <삭제 2016. 10. 31>

제 23 조(이수학점) ①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24학점으로 한다. 단, 비동일계인 경우 선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31>

② 매 학기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6학점 이내로 한다. 단, 제4학기 부터는 9학점 까지 이수할 수 있으나 최소 5학기 등록을 하여야 하며, 선수과목의 이수학점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4. 4. 22>

제 24 조(수업) ① 매학기 개설 교과목은 입학 당시 승인된 교육과정표를 기준으로 한다.

② 개설교과목은 매학기 개시 전에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수강신청 이전에 공고한다.

제 25 조(선수과목) ① 학부과정의 전공 또는 부전공이 대학원의 전공과 다른 경우 학과 특성에 따라 선수과목을 지정할 수 있다. 단, 학부과정의 전공이 비동일계열인 자가 선수과목을 이수한 것을 증빙할 경우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04. 20>

② 선수과목의 이수는 학기당 이수학점에 가산하지 아니하며, 학위과정에서 취득한 수료학점으로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부과된 선수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정의 수료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 26 조(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① 총장의 승인을 얻어 외국대학 및 대학원과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학위수여 등 제1항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27 조(타 대학원 이수학점의 인정) 국내외 타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6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28 조(폐강 및 분반) ① 매학기 개설 교과목중 수강인원이 10명 미만(학년별 학생 수 10명 이하인 학과 : 학년별 등록인원의 50% 미만)이거나 강의콘텐츠 제작이 사정상 불능할 경우 폐강하나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개설할 수도 있다. <개정 2014. 10. 31> <개정 2018. 3. 1>

② 한 강좌의 최대 수강인원은 25명으로 하고, 초과 시 분반한다.

제 29 조(교수시간) ① 교원의 교수시간은 매학년도 30주(학기당 15주)이상을 기준으로 정한다.

② 대학원 전임교원의 책임시간은 주당 9시간으로 하며 대학원 강의는 학기당 6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보직교원·겸임교원·초빙교원·시간강사의 책임시간은 별도로 정한다.

③ 교원의 교수시간은 각 학과의 담당시간을 통산한다. 단, 부설기관 및 타 기관의 강의 및 상담, 학생지도 등은 교수시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0. 31>

④ 효율적인 수업운영과 강좌의 질 담보를 위해서 강좌별로 튜터제를 운영한다.

제 30 조(수강신청) ① 학생은 매학기 정해진 수강신청기간에 교육과정을 참고하여 수강하고자 하는 과목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수강신청의 절차와 방법 등은 따로 정한다.

제 31 조(수강포기) 학기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과목의 수강이 어려운 경우 해당과목의 수강을 포기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은 따로 정한다.

제 32 조(출석인정) ① 학습요구시간이 부여된 회차(강)의 출석은 주차별 강좌개시일로 부터 2주내에 수강하면 출석이 인정된다. 단, 13주부터의 출석인정기간은 학기종료일로 한다.

② 출석인정기간 외에 수강할 경우, 지각으로 보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3. 9. 15> <개정 2018. 11. 1>

③ 학생의 오지출장, 장기입원, 상고 등 개인적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 출석인정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출석인정처리는 학기별 수업시간의 4주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장 성적평가

제 33 조(성적평가) ① 성적의 평가는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수업의 규모 및 내용에 따라 상대평가 또는 P/F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1>

② 성적은 시험, 출석, 과제, 학습활동참여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며 그 등급과 점수 및 평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표시한다.

등 급	성 적	평 점
A+	95~100	4.5
A	90~94	4.0
B+	85~89	3.5
B	80~84	3.0
C+	75~79	2.5
C	70~74	2.0
F	69점 이하	0

③ 각 교과목의 출석산정기준의 1/4(25%)이상을 결석한 자는 출석미달로 처리하고, 당해 교과목의 학점을 미취득(F)으로 처리한다.

④ 천재지변, 학생의 질병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어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는 과목 담당교수의 재량에 따라 대체과제를 부과하여 성적을 평가할 수 있다. 단, 대체과제는 1회로 제한한다

⑤ 교과목 성적이 C등급 이상일 때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

⑥ 수강승인을 받고도 수강하지 아니한 과목의 성적은 미취득(F)으로 처리한다.

⑦ C+ 등급 이하의 교과목은 재이수할 수 있다.

⑧ 교강사는 학기초 일정기간 내에 평가기준 및 항목 등을 학생들에게 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34 조(성적의 불인정)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성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1.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성적
2. 6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한 성적(제4학기, 제5학기 한해 9학점 인정) <개정 2014. 4. 22>
3. 이미 이수한 교과목의 취득성적
4. 출석미달 과목의 성적
5. 부정한 방법으로 성적을 취득한 경우

제7장 수료 및 학위수여

제 35 조(수료) ① 수업연한 이상을 등록하고 최저학점 24학점을 취득한 학생에 대하여는 각 과정의 수료를 인정한다.

② 석사학위과정 수료요건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수업연한 이상을 등록한 자
2.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한 자
3. 취득학점의 총 평점평균 B(3.0)이상

③ 수료가 인정된 자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수료증명서를 발급한다.

제 36 조(학위수여 요건) ① 각 학과에서 수료 학점을 이수하고 학위취득자격시험 및 석사학위 청구논문 심사에 합격한 자에게 석사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13. 9. 15> <개정 2014. 10. 31>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석사학위논문의 제출에 갈음하여 논문대체 학점(6학점 이상)을 추가 취득한 자에게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 37 조(자격시험) 학위취득자격시험으로 외국어시험과 전공시험을 실시한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3. 9. 15>

제 38 조(학위청구논문제출) 학위논문제출과정에 있는 자가 학위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학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한 자
2.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3.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승인을 받은 자

제 39 조(논문 심사) 학위논문 심사를 위하여 대학원위원회는 교내·외 전공 또는 유관전공 교수 또는 사계의 권위자 중에서 3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위촉한다.

제 40 조(학위수여) 총장은 학위수여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별표 2의 학위를 수여한다. 단, 전문분야를 표기하여 수여하며, 학위기는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

제 41 조(학위수여의 취소)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취득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그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제8장 장학금, 학생활동 및 지도

제 42 조(학생의 의무) 학생은 대학원의 학칙 및 관련 제 규정을 준수하고 성심성의로 학업에 열중하며 덕성과 교양을 높여 학생으로서 신분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되며, 교수의 지도에 따라 연구에 정진하여야 한다.

제 43 조(장학금)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 및 대학원 발전에 기여한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 44 조(포상) 총장은 품행이 바르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학교 위상을 드높인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 45 조(징계) ① 학생이 본 학칙을 위반하거나 학생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대학원 학생지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학원장이 징계 할 수 있다. <개정 2019. 9. 1>

1. 본 대학원 학칙을 위반한 자 <신설 2019. 9. 1>
2. 대외적으로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신설 2019. 9. 1>
3. 학업성적이 열등하고 품행이 불량한 자로서 학업성취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신설 2019. 9. 1>
4. 면학질서를 저해하거나 학생의 본분을 이탈한 행위를 한 자 <신설 2019. 9. 1>
5.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등의 성희롱을 한 자 <신설 2019. 9. 1>
6. 출석, 시험, 과제에서 적절하지 못한 행동으로 전체적인 학습진행에 문제를 야기시킨 자 <신설 2019. 9. 1>
7. 온-오프라인상에서 언어폭력 및 스토킹을 행사한 자 <신설 2019. 9. 1>

② 징계는 근신(2주이내 로그인 금지)·유기정학(2주이상 4주이내 로그인 금지)·무기정학(4주이상 로그인 금지) 및 퇴학으로 구분한다. <신설 2019. 9. 1>

③ 대학원 학생지도위원회에서 1항에 대한 위반사항이 경미하고,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징계 이외에 경고를 줄 수 있다. 이는 경고장으로 통지한다. <신설 2019. 9. 1>

④ 모든 징계대상자는 징계심의시 회의에 출두하여 자신에 대한 변론을 할 수 있다. <신설 2019. 9. 1>

제 46 조(학생회) ① 학생의 자율적인 활동을 통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인격을 함양하고 자유롭고 창조적인 학술연구 및 그 응용방법을 연마하기 위하여 학생회를 둘 수 있다.

② 학생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학생 자치활동의 육성과 발전을 돕기 위하여 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

제9장 공개강좌, 연구과정

제 47 조(공개강좌) ① 학위과정 외에 교양 또는 전문분야에 관한 이론과 기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위하여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② 공개강좌를 이수한 자에게는 이를 증명하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③ 공개강좌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48 조(연구과정) ① 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등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학원 과정의 강의를 수강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연구과정생의 자격으로 수강을 허락할 수 있다.

② 연구과정생은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연구과정생의 이수학점은 대학원 학위과정생에 준하여 관리한다.

④ 연구과정생으로서 과정을 이수하고 연구실적이 인정된 자에게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연구실적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⑤ 연구과정생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10장 직제 및 대학원위원회

제 49 조(직제) 대학원의 직제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50 조(교수구성) ① 대학원에 각 학과로 1명의 학과장를 둔다. <개정 2014. 10. 31>

② 학과장은 그 전공분야의 수업과 연구지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학생의 이수과목 지정 및 기타 수학지도를 담당한다.

③ 각 학과에는 개별학생의 학사지도·연구지도 및 논문지도를 담당하는 지도교수를 둔다. <개정 2014. 10. 31>

제 51 조(대학원위원회) ①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학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개정 2014. 4. 22>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 기간으로 한다.

제 52 조(위원회의 기능)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입학·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학과의 설치, 폐지와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4. 10. 31>
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대학원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5. 기타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 53 조(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발의 또는 위원 과반수의 발의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4 조(자체평가) ① 본 대학원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등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고등교육법」제11조2(평가) 및「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해당 기관의 교육·연구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신설 2016. 10. 31>

②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는 2년마다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고등교육법」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인정기관이 학교의 운영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를 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연도 자체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6. 10. 31>

③ 자체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자체평가 전담조직·인력,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6. 10. 31>

제11장 학칙 개정

제 55 조(학칙 개정 절차) ① 학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학칙개정안을 1주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31>

② 대학원의 교직원은 공고된 개정안에 대하여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학칙개정안은 심의·공포 절차를 거쳐 총장이 이를 확정한다.

제12장 보 칙

제 56 조(준용규정) 이 학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교의 학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6. 10. 31>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4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4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6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6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대학원 학칙 제32조(출석인정)는 2019학년도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모집단위 및 입학정원

◎ 2020학년도 <신설 2019. 9. 1>

대학원명	학과명	입학정원
휴먼서비스	상담심리학 사회복지학	30명

◎ 2016학년도 <신설 2015. 9. 1>

대학원명	학과명	입학정원
휴먼서비스	상담심리학 사회복지상담학	30명

◎ 2015학년도 <신설 2014. 10. 31>

대학원명	학과명	입학정원
휴먼서비스	상담심리학 사회복지서비스학	30명

◎ 2014학년도 <개정 2014. 10. 31> <삭제>

◎ 2013학년도 <개정 2014. 10. 31>

대학원명	학과명	입학정원
휴먼서비스	상담심리학	30명

[별표2] 수여학위 <개정 2014. 10. 31> <개정 2015. 9. 1> <개정 2019. 9. 1>

대학원명		학과명		학위종별	
휴먼서비스 대학원	Graduate School of Human Service	상담심리학	Counselling Psychology Department	문학석사	Master of Arts
		사회복지서비스학	Social Welfare Service Department	사회복지학석사	Master of Social Welfare
		사회복지상담학	Social Welfare Counselling Department		
		사회복지학	Social Welfare Department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4. 10. 31>

수 료 증 명 서

성　　명 :
생 년 월 일 :　　년　　월　　일생
과　　정 :　　과정
학　　과 :　　학과
수료 연월일 :　　년　　월　　일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부산디지털대학교 ○○대학원장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4. 10. 31>

석 제 호

학 위 기

성명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대학원 ○○○학과 석사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과 자격심사에 합격하여 ○○석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인정함.

년 월 일

부산디지털대학교 ○○대학원장(학위) 직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석사(○○○학)의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부산디지털 대 학 교 총 장(학위) 직인

학위등록번호 : 부산디지털대20○○(석)○○○

【별지 제3호 서식】

연 구 실 적 증 명 서

성 명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대학원에서 학칙 제조에 의하여 ○○학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연구하였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부산디지털대학교 ○○대학원장(학위) 직인